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2045호(號) 1933(昭和 8)년 11월 1일 수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541호(號)

조선국유철도화물운임(朝鮮國有鐵道貨物運賃)에 대하여 아래[左]와 같이 할인(割引)함.

1933(昭和 8)년 11월 1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- 1 품 명(品 名) 감귤류(柑橘類)
- 2 발 역(發 驛) 부산(釜山)
- 3 착 역(著 驛) 조선총독부철도국선(朝鮮總督府鐵道局線), 조선철도주식회사선(朝鮮鐵道株式會社線), 남만주철도주식회사선(南滿洲鐵道株式會社線) (경유[經由]를 제[除]함)
- 4 급종별(扱種別) 차급(車扱)
- 5 임 륜(賃 率) 경성(京城), 인천(仁川), 안동(安東), 진남포(鎭南浦), 목포(木浦), 군산(群山), 원산(元山), 함흥(咸興), 성진(城津) 및 마산(馬山) 착(著) 보통임륜(普通賃率)의 3할(割)5푼(分) 감(減) 남만주철도주식회사선착(南滿洲鐵道株式會社線著: 경유[經由]를 포함[包含]함) 조선총독부철도국선내(朝鮮總督府鐵道局線內) 보통임륜(普通賃率)의 4할(割) 감(減) 기타(其他) 착(著) 조선총독부철도국선내(朝鮮總督府鐵道局線內) 보통임륜(普通賃率)의 1할(割) 감(減)
- 6 기간(期間) 1933(昭和 8)년 11월 1일부터 1934(昭和 9)년 7월 31일까지
- 7 기사(記事) 가 소정임륜(所定賃率)에 의(依)해 특정구간통계(特定區間通計) 7200톤(噸) 이상(以上)을 탁송(託送)한 자(者)에 대해 기수운임(既收運賃)과 본(本) 임륜(賃率)에 의(依)한 운임(運賃)과의 차액(差額)을 할려(割戻)하는 것으로 함. 나 특별톤급(特別噸扱)에 의(依)해 출화(出貨)한 수량(數量)은 전호(前號)의 수량(數量)에 가산(加算)하는 것을 득(得)함.